##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61

발의연월일: 2024. 10. 4.

발 의 자: 박해철 • 박 정 • 추미애

김우영 · 강유정 · 임호선

문금주·장종태·조인철

김병기 • 최민희 • 이기헌

김 현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에 65세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됨.

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3세에서 2028년 64세, 2033 년에는 65세까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상황은 현행 60세 정년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과의 격차 확대에 따른 심각한 소득 공백은 물론, 이에 따른 사회적 빈곤 문제 등 심각한 국가위기를 초래할 것임.

이미 많은 선진국가들이 정년과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년을 연장해 왔음.

이에 현행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하여,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과의 차이에 따른 격차를 줄이고,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60세"를 "65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0세"를 "65세"로, "60세로"를 "65세로"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중 "임금체계 개편"을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60세"를 "65세"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300인"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년에 관한 적용 특례)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5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연령으로 한다.

1. 시행일부터 2027년까지는 63세

- 2.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 3. 2033년부터는 65세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	제19조(정년) ①
의 정년을 <u>60세</u> 이상으로 정하	<u>65세</u>
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	②
고 근로자의 정년을 <u>60세</u> 미만	<u>65</u> 剂
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u>60</u>	<u>65</u>
<u>세로</u> 정한 것으로 본다.	세로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u>임금</u>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u>임금</u>
<u>체계 개편</u> 등) ① (생 략)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②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	
한 지원을 <u>할 수 있다</u> .	<u>하여야 한다</u>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underline{6}$	③ <u>6</u>
<u>0세</u>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u> 5세</u>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	
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임금체계 개편 등을</u>	<u>필요한</u> <u>하여</u>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u>야 한다</u> .
<u>할 수 있다</u> .	

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	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
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	출 등) ① <u>300인</u>
<u>는 수</u>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	
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